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해 건축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본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에서는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하고 있었으나,
긴급조치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른 최대범위인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한하여는 최대범위의 이행강제금 감경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